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4.(금)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2. 9. 소형준 의원 외 8명 발의 (의안번호 98호)

나. 회부일자: 2023. 2.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 2. 20.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수행을 지원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고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1조 ~ 제2조 : 목적 및 정의
- 제3조 : 교섭단체의 구성
 -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그 외 의원 3명 이상 별도 교섭단체 구성
- 제4조 : 교섭단체의 기능

-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성 등
- 제5조 : 예산의 지원
 -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천곤)

- 본 규칙(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는 교섭단체의 목적과 정의, 제3조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 제5조는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의회 내 일정한 정당 및 단체에 속한 의원들의 의사를 조율하고 사전에 교섭단체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규칙 제정을 통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¹⁾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4.(금)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2. 9. 양순임 의원 외 11명 발의 (의안번호 99호)

나. 회부일자: 2023. 2.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 2. 20.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국외출장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천곤)

- 본 규칙(안)은 성북구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호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를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로 변경하고, 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으로 변경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변경함.
- 검토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지방의회 의원 외교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